목 차

제1장 총칙

제2장 현장실습 운영

제3장 실습학기제 운영

제4장 현장실습 지원체계

부칙

작성부서	현장실습지원센터	제정일자	2017. 06. 23.

구 분	작 성	검 토			승 인
직 책	담 당	현장실습지원센터장	학생취업처장	기획처장	총 장
서 명					
일 자					

개정이력		
개정 번호	개정일자	개정내용
1	2017. 06. 23.	현장실습 운영 규정 제정
2	2018. 02. 28.	실습학기제 운영 평가와 만족도 조사 관련 내용 추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동원대학교(이하 “이 대학교”이라 한다) 학생의 현장실습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장실습수업"(이하 ‘현장실습’)이란 대학교와 현장실습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산업체 현장에서 학생에게 이론의 적용, 실무교육 및 실습 등을 실시하는 산학협력 교육과정을 말한다.
2. “실습학기제”란 학기 단위로 일정기간 연속하여 운영되는 현장실습을 말한다.
3. "현장실습기관”(이하 "실습기관”이라 한다)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기업 등 학생의 실무 교육 및 실습이 가능한 기관을 말한다.
4. "현장실습지원비”는 현장실습의 원활한 수행 및 현장 실습 장려 등을 위하여 대학교와 실습기관 간 협의하여 결정한 교육지원비용을 말한다.
5. "현장실습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이라 한다)란 현장실습 운영 및 관리를 위해 대학교에서 운영하는 조직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실습기관과의 협약에 의한 현장실습 학점인정에 한하여 적용하며, 「직업교육훈련촉진법」,「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등 별도의 법령에 따라 운영하는 현장실습은 해당 법령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 현장실습 운영

제4조(현장실습 구분) ① 현장실습은 학기 수업의 일부 또는 비연속적으로 운영하는 실습도 포함한다.

② 현장실습은 필요한 경우 학기단위(계절학기 포함)로 일정기간 연속 실시하는 실습학기제로 운영할 수 있다.

제5조(현장실습 운영 원칙) ① 현장실습은 학생이 향후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지식·기술·태도를 습득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현장실습은 산학협력을 기반으로 해당 전공분야의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학생 전공과 관

련된 실무 실습 과정으로 운영한다.

③ 실습생의 전공 분야, 현장실습프로그램의 적절성, 실습기관 교육담당자의 전문성, 현장실습 시설·설비의 적합성 및 후생복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실습기관을 선정한다.

④ 현장실습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으로서의 요건을 갖추도록 한다.

가. 현장실습 수업계획

나. 수강신청 계획

다. 실습기관 교육담당자 및 현장 지도 계획

라. 지도(담당)교수 현장 방문 지도 계획

마. 평가 방식, 학점 부여 근거 및 기준

바. 기타 현장실습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⑤ 실습기관은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이하 “현장실습생”이라 한다)에게 현장실습의 목적과 범위를 벗어난 업무를 부과할 수 없다.

제6조(현장실습 운영 시간) ① 현장실습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현장실습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간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실습 수행 과정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실습기관이 현장실습생의 동의를 얻어 1주간 최대 5시간을 한도로 실습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오후 10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의 야간 현장실습은 운영할 수 없다. 다만, 교육목적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실습생과 협의하여 야간에 운영할 수 있다.

② 현장실습은 제1항에 따라 1일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과 현장실습이 실시되지 않는 휴일이 보장되어야 하고, 실습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현장실습생이 1개월 기준 1일의 휴일을 활용할 수 있는 기준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제7조(현장실습지원비) ① 실습기관은 현장실습생의 실습수행이 원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실습지원비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현장실습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부담 방법 등은 대학과 실습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제5조제4항에 의한 수업의 요건을 갖추지 않는 현장실습으로서 실질적 근로에 해당하는 경우,「최저임금법」및「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시되는 시간급 최저임금액 이상의 실습지원비를 현장실습생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현장실습생) ① 현장실습 중 학기제 현장실습은 재학 중인 자로서 2년제는 2학기 이상, 3년제는 4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② 현장실습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학교의 현장실습 운영 규정에 따른 절차와 기준
2. 실습기관의 안전관리규정과 기준
3. 현장실습 중 습득하게 된 실습기관의 기밀사항 누설 금지 등

③ 현장실습생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보장받는다.

1. 현장실습 교육 및 실습수행에 관한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권리
2. 현장실습 중 보건 및 산업재해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와 사고 및 재해 시 보상받을 권리
3. 현장실습 중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현장실습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
4. 대학의 현장실습 운영규정에 따른 운영 기준 또는 현장실습 운영 계획과 다른 사항의 발생 시 조치 받을 권리

제9조(실습 내용 변경 등) ① 실습기관에서는 현장실습 운영 중 실습기관의 사정으로 현장실습 내용, 기간 및 계획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학교 측에 통보하고 학교 및 현장실습생의 동의 하에 변경하여야 한다.

② 실습기관에서는 현장실습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를 학교 측에 통보하고 학교와의 협의 하에 현장실습을 중단 또는 취소할 수 있다. 단, 실습기관의 사정으로 중단 또는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현장실습생의 현장실습 교육과정 이수에 문제가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무단결석 등 현장실습생의 불성실한 태도로 인해 현장실습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

2. 제5조 제4항의 수업계획에 따른 실습지도에 불응하는 경우

제10조(현장실습의 평가 등) ① 학교에서는 현장실습 평가 기준을 실습기관에 안내하고, 실습기관에서는 해당 기준에 따라 현장실습생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해당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실습기관에서는 자체 기준 및 규정 등으로 현장실습생을 평가하거나 그 결과에 대한 징계, 불이익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다.

제3장 실습학기제 운영

제11조(실습학기제 구분) ① 실습학기제는 현장실습 중 전일제(1일 6시간 이상)로 4주 연속 운영하며, '현장실습'과목으로 학점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② 실습학기 기간 및 시기에 따라 학기제(정규학기 중 실시)와 계절제(하계,동계 방학 중 실시)로 구분하며, 현장실습 장소에 따라 국내 및 해외 실습학기제로 구분한다

.

제12조(신청자격) ① 실습학기제의 신청은 최소 2개 학기(3년제 학과의 경우는 4개 학기) 이상의 성적을 취득한 학생이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중 학기제 실습학기제의 경우 해당 학기 등록을 마친 재학생이 신청할 수 있다.

② 세부 신청 자격은 지원센터 지침으로 따로 정한다.

제13조(실습기간 및 부여학점)

① 계절제 실습학기제 학점부여 : 4주 120시간 이상, 4학점

② 학기제 실습학기제 학점부여 : 15주 600시간 이상, 20학점

제14조(실습학기제 운영 방법)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운영 절차에 따라 실습학기제를 운영하여야 하며 운영절차에 따른 세부적인 내용은 지침으로 따로 정한다.

1. 학기별 실습학기제 운영 계획 수립
2. 학기별 실습학기제 운영 산업체 수요 조사 및 접수

3. 실습학기제 교육과정 개설 및 운영정보 공지
4. 실습학기제 참여 학생 신청 및 접수
5. 실습기관 및 학생 간 연계 및 선발
6. 실습학기제 참여 학생 대상 사전 교육
7. 실습학기제 상해보험 가입 등 참여 학생 보호 조치
8. 실습기관별 실습학기제 계획에 따른 실습 수행
9. 실습학기제 수행 점검 및 관리
10. 실습기관의 현장실습생 출석부, 평가표 등 제반 서류 제출
11. 참여 학생의 보고서 등 제반 서류 제출
12. 학점인정 기준에 따른 평가 및 학점 인정 처리
13. 실습학기제 운영평가 및 만족도 조사 실시<개정 2018.02.28.>

제15조(실습학기제 협약) ①학과와 실습기관은 5조 제4항 각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며, 실습학기제 협약사항에는 다음 가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실습학기제 교육 실시기간 및 장소
2. 현장실습생에 대한 평가 관련 사항
3. 실습학기제 기간 중 학생의 보건·위생과 산업재해의 예방 관련 사항
4. 기타 현장실습 교육에 필요한 사항

②이를 바탕으로 실습을 시작하기 전에 학교, 현장실습생, 실습기관 간 협약을 체결한다

제16조(실습기관) ① 실습기관으로서 자격 요건은 다음 가 호의 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1. 학생의 전공분야와 연관된 기관
2. 학생의 보건·위생 및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기관
3. 학생의 현장교육 및 실습, 생활지도가 가능한 기관
4. 학생의 전공지식 배양이 가능하도록 전공과 유관한 업무를 부과할 수 있는 기관
5. 기타 주관부서 현장실습 운영 지침에서 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

② 그 밖의 실습기관 자격요건에 관한 세부 기준은 주관부서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17조(실습기관 관리 및 점검) ① 실습기관은 실습학기제 운영 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세부운영 계획서를 학교에 제출하고 이를 협의한다.

1. 실습기관 정보
2. 실습학기제 시간 및 기간
3. 현장실습 대상 전공, 인원 및 학년
4. 현장실습 교육 및 실습내용
5. 현장실습지원비 및 현장실습생 지원 사항
6. 실습기관 교육담당자에 대한 사항 등

② 실습기관에서는 현장실습과 관련하여 학교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고 협의한 결과에 따라 운영한다.

1. 현장실습운영규정에 따른 현장실습 운영 기준 및 절차
2. 현장실습생 교육, 지도 및 관리를 위한 실습기관 교육담당자의 배치
3. 현장실습 프로그램 운영 계획
4. 현장실습에 필요한 시설, 장비, 물품 등의 확보 및 제공
5. 현장실습생 지도, 출석 및 평가 관리

③ 실습기관은 현장실습생의 출결, 교육운영, 실습평가 및 현장실습생 보호를 담당하는 실습기관 교육담당자를 사전에 지정한다. 필요한 경우 학교 또는 실습기관은 교육담당자에게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학생 보호) ① 실습기관 또는 학교는 현장실습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 및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교육, 성희롱 예방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학교 또는 실습기관은 현장실습 중 상해 등의 사고로 인한 생명·신체상의 손해 및 배상책임 등의 상황에 대비하여 현장실습생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는 등 보호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대학은 교육부장관이 현장실습에 대한 보건·안전·환경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하는 경우 기 기준에 따라 시행한다.

제4장 현장실습 지원 체계

제19조(현장실습지원센터) ① 대학은 체계적 현장실습 관리를 위하여 현장실습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②현장실습지원센터는 현장실습 시행계획 수립, 관련 규정 제·개정 등 현장실습 전반에 관하여 총괄적으로 관장하며 세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처리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3. **(다른 규정의 폐지)** 현장실습 운영 시행 세칙과 실습학기제 운영규정은 폐지한다.